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80
------------	------

발의연월일 : 2017. 8. 3.

발의자 : 이개호 · 위성곤 · 김정우
김태년 · 박주민 · 김해영
백혜련 · 표창원 · 박정
어기구 · 김병기 · 김현권
의원(12인)

제안이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해양자원의 복합적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는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과 해양활동 관리정책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률은 영해를 외측 한계로 하는 좁은 해양공간 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해양공간의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한 과학적·통합적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현행 「연안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며 과학적 평가기반의 부족과 연안용도해역 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결여 등의

한계가 있으며 해양공간에서의 구체적 행위 제한과 실질적 관리 권한 행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제한적인 소극적 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 확대 등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의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변국가와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관할권 확보 갈등에 대응하고, 통합된 해양공간정보와 과학적 특성평가를 근거로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하여 공간 선점경쟁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가치저하, 이용-보전 및 이용자간 갈등의 심화 현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우리나라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미래세대로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해양을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법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공간 이용과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제2장에서는 해양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해양공간관리위원회를 두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관리, 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해양공간계획은 타법에 따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행위를 할 경우 해양공간계획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제3장에서는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어업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

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 및 유도구역을 지정하고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내의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제4장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해양공간 정보를 수집·요청·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해양공간정보와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제5장 보칙에서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국제협력의 추진 등 해양공간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유도구역”이란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해양공간에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10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 ①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관리,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변경

2. 해양공간적 합성협의

3. 해양공간특성평가

4. 해양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 등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자

3.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자

④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7.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구역: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내의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유도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양공간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도구역이 제13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유도구역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과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유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

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공간적 합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 합성 협의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 특성 평가 결과와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적 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의 승인·수립·변경과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특성 평가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생산·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해양공간정보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의 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처리·저장 및 통합관리

2.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공간정보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제작·간행

6. 해양공간정보의 국제적 교환업무 수행 및 국제적 의무 수행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해양공간계획평가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 구축·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을 위한 대상·추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7조에 따른 해양 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이 법 제13조제1항 따른 다음 각 호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어업활동구역: 어항구, 어장구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6.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7.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 ②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우선순위는 이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의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이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고, 제17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해양공간 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② 이 법의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3조제1항제5호의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 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이 법의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3조제1항제7호의 항만 및 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로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장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 ④ 이 법의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3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4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동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 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